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4.

복지문화 위원회
전 문 위 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4.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남현주 의원 외 9명
- 발의일자: 2024. 4. 5.(금)
- 회부일자: 2024. 4. 5.(금)
- 검토기간: 2024. 4. 8.(월) ~ 4. 12.(금)

2.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을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 내용 신설(안 제8조제1항)
- 나. 다자녀 감면 혜택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을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별표2 제7호)

4.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등을 반영해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에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자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배상금(10%)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결혼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발표 (2023년 3월 28일)하면서¹⁾ 저출산 등의 극복을 위해 정부의 다자녀 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것을 제시한 바 있음.
- 이 개정조례안은 이처럼 점차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 권리의식을 반영해 그동안 귀책 사유에 따른 배상책임에 운영자 배상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내용을 수정하고,
- 저출산 등을 고려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함으로써 정책의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체계와 정책적 필요성을 살펴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1)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91년 1.71명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고, 초혼 신혼부부 평균 자녀 수가 2021년 0.66명인 상황을 반영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완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관계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5. <생략>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8. <생략>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④ <생략>